

안전관리규정 신·구대비표

현 행	개 정(안)	비 고
<p>제15조(안전보고) 안전관리책임자는 매년 1월중 안전종합보고를 주관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.</p>	<p>제15조(안전보고) 안전관리책임자는 대학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안전관리 주관부서가 요청할 시에 안전 관련 자료를 통보하여야 한다.</p>	<p>기존 연구실책임자에 특정시기에 안전종합보고에 대한 의무사항을 삭제하고, 안전관리 주관부서 요청시 자료 통보로 내용 같음</p>
<p>(별표1) 대학 안전관리 조직체계</p>	<p>(별표1) 대학 안전관리 조직체계</p>	<p>감염병재해, 생활안전 부분 추가</p>